

대전지방법원 2020. 11. 12 선고 2019가단138280 판결 [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

담당변호사 강명구

피 고 B

변론 종결 2020. 9. 17

판결 선고 2020. 11. 12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2019 . 1. 23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9. 1. 24. 접수 제1099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전제되는 사실

가. 원고와 C은 2019. 3. 12.자로 '원고가 C에게 2019. 1. 5. 1,900만 원을 변제기는 2019. 8. 15.,이자는 연 24%로 대여'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(공증인가D법무법인 증서 제2019제383호,이하 '이 사건 공정증서')를 작성하였다.

나. 피고는 이이하 '채무자')과 2019. 12. 11. 협의이혼을 하였다.

다. 채무자가 피고와 혼인기간 중 채무자 명의로 된 부동산 중 별지 기재 각 부동산 (이하 '이 사건 상가')과 세종시 E F호 오피스텔(이하 '이 사건 오피스텔') 총 3개 부동산이 있었는데, 채무자는 2019. 1. 23.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증여하는 계약(이하'이 사건 증여계약')을 체결하고 2019. 1. 23.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'이 사건 이전등기')를 넘겨 주었다.

라. 원고는 채무자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받을 당시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받았는데,2019. 7. 23. 비로소 이 사건 오피스텔에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.

[인정근거]: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을 제1내지 4,6호증,변론 전체의 취지]

2. 청구에 대한 판단

가. 원고의 청구원인

원고는,'자신이 2019. 1. 5. 채무자에게 1,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, 채무자와 부부인 피고가 채무자로부터 채무자 소유인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이전등기를 받았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이 사건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'고 주장한다.

나.판단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고(대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0다64792판결 등 참조),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(대법원 2007. 5. 31. 선고 2005다28686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인 2019. 1. 23. 채무자가 무자력인지에 관하여 을 제2, 7,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판사 문보경

별지